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건강기능식품 사전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 제도 (쿼터) 의무 대상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규제 강화 정책으로 무역부 규정 2023년 36호 (2023.12.11) 발표,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과 선적 전 검사 (Laporan Surveyor, LS)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
  - 개정된 규정(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을 통해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전자기기,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서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
  - 2023년 12월 11일 공표된 이번 규정은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되게 되며, 수입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하고 물품이 반송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
  - 식품은 HS코드 기준 5개 건강기능식품이 해당 됨

No.	HS CODE	상품설명
1	1512.19.10	정제되지 않은 해바라기씨유나 홍화씨유 제품
2	2106.90.53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3	2106.90.71	건강기능식품의 인삼 효능(기능성) 포함 제품
4	2106.90.72	기타 건강기능식품
5	2106.90.73	기능성 원료의 혼합물 제조 제품

- 사전수입승인(PI) 신청 주체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이며 수입업체는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INSW)에 수입물량을 신청

-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수입물량을 통보함. 실무적으로는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전에 시작해야 하며, 이는 유관기관의 추천서를 구비 요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신청 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 출처 : 무역부 규정 No.36, 2023

II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1.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모든 식품\*에 국가 할랄인증 로고인 시할랄(Sihalal)이 제품에 표기 부착되어야 하며, 하람 제품의 경우 식약청 규정에 따라 하람 성분 경고 표시를 한 제품은 수입 및 유통이 가능
  - \* 신선농산물, 돼지고기/알코올 등 하람성분이 들어간 제품, 하람제품 제외
  - \* 하람제품, 하람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식약청 라벨링 규정에 의거 표시하면 수출이 가능
- 인도네시아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인정(MRA) 체결
- 이에 따라 한국의 2개 기관에 할랄인증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외인정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 식품은 사전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해외 할랄인증 등록을 받아야 사용 가능

- 해외 할랄인증 식품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라벨링 수정신고 또는 신규 제품 등록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제품에 할랄 로고 사용 승인을 받게 됨. 이때 인도네시아 국가 할랄 로고를 필수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의 상호인정기관의 할랄로고를 병행 표기가 가능하게 됨
-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표기 사례 (상호인정된 해외 할랄 로고 사용 시)

<p>해외 할랄인증식품 사전 등록 후 인니 할랄인증로고(Sihal) 만 표기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 할랄인증 제품과 동일)</p>	
<p>인니 할랄인증 로고와 상호인정을 받은 해외 할랄인증 로고 병행 표기(KMF)</p>	
<p>인니 할랄인증 로고와 상호인정을 받은 해외 할랄인증 로고 병행 표기(KHA)</p>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국가 할랄로고(Sihalal) 필수 표기 의무

\* 출처 : BPJP 규정 2022년 145호(할랄 로고 규정)

## 2. 해외 상호인정 할랄인증기관 할랄인증서 등록 절차 소개



[출처 : <https://bpjph.halal.go.id/detail/registrasi-sertifikat-halal-luar-negeri>]

### ○ 절차 개요

1) 기존 할랄인증 신청 사이트 접속 (<https://ptsp.halal.go.id/>)

- 아이디가 없는 기업의 경우 계정을 신청한 후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
- 접수 신청은 수출업체의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공한 인도네시아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2) 해외 할랄 등록 메뉴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인니 할랄인증청(BPJPH)은 접수 후 5 근무일 내에 신청 구비서류의 무결성 검토하여 다음 절차로 처리 또는 부족 서류 등의 추가 또는 수정 요구사항 안내

3) 서류 검토를 통해 이상 없을 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에서 등록비  
인보이스 발행(신청 건별 IDR 800,000 예상)

-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7 근무일 내에 비용 납부

- 비용 납부 확인 및 납부 확인 처리

4) 해외 할랄인증서의 등록 번호 부여 및 등록 확인서 발급

- 해외인정 할랄인증서의 등록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기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서류는 추후 공지예정
- 신청 사이트의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메뉴는 아직 준비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출처 : 할랄인증청(BPJPH) 홈페이지

### III | 통관문제사례 관련

---

(해당없음)

### IV | FTA 이행이슈 관련

---

(해당없음)